

과징금·과태료 부과 사항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
2. 과징금 등의 종류	과태료
3. 과징금 등의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2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 2
4. 과징금 등의 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-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
5. 과징금 등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태료 : 1,500만원 (상기 4. 과징금 등의 원인별 각 900만원, 600만원)
6. 기타	

기재상의 주의

주1)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시